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. 10. 2 선고 2024가단1002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

담당변호사 박시울

변 론 종 결 2024. 7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. 10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. 4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등 참조)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각 2018. 1. 10. 및 2018. 4. 3.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,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. 1. 11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희선

별지